

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☐ 개정이유

- 선산보건진료소 인력보강을 위하여 승인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을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로 지정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코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지정내용 : 보건진료원

☐ 참고사항

- 경북도 자치행정과-5357(“04. 7. 2)호의 구미시 보건진료원 정원 승인

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보건진료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	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
제3조(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) ---- ----- 1. - 11 (생략) <신설>	제3조(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) ---- ----- 1. - 11. (현행과 같음) 12. <u>보건진료원</u>